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성숙경* · 홍성걸**

Expanding th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ouk-Kyung Sung* and Seong-Gul Hong**

〈 목 차 〉

I. 서 론	IV.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 전략
II. 남북한 수산물 수급 및 반입 현황	1. 반입품목 및 반입량 확대
1. 남한과 북한의 수산물 수급	2. 반입승인품목의 자유화
2. 북한산 주요 수산물 반입현황	3. 품질관리개선
III.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4. 원산지 증명제도개선
1. 반입규모의 소량화와 상품성	V. 결 론
2. 생산지 상품관리의 제약	참고문헌
3. 국내 반입에서의 제약	Abstract

I. 서 론

우리나라 수산업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주도 산업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생산여건의 악화 및 외부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안오염과 간척매립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었고, 유엔해양협약법의 발효(1994), 한·일어업 협정(1999), 한·중어업협정(2001)의 체결 등으로 조업어장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매년 증가하여 1995년 321만 5천 톤에서 2007년에는 462만 5천 톤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내 생산량은 327만 5천 톤

접수 : 2009년 12월 4일 최종심사 : 2009년 12월 18일 게재 확정 : 2009년 12월 22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대표집필(Corresponding author: 02-2105-2828, ssk@kmi.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02-2105-2842, sghong@kmi.re.kr)

으로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미국, 북한 등에서 매년 백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운송거리가 짧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및 확대는 저렴한 수산물의 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1984년 8월 남북한경제회담 이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직교역이 가능해져 매년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 3,599톤에서 2007년에는 5만 5,081톤으로 연평균 28.1%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07년 수산물 수입량 139만 2천 톤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감소, 품질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¹⁾은 198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남북경협에 대한 연구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산 수산물 반입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주요 연구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쾌 · 심기섭(1998)은 수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김영훈 · 임정빈(2001)은 북한산 농산물 반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해 반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김영훈 · 권태진 · 남민지(2008)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통계자료를 이용해 품목별 반입현황과 특성, 유통실태 등을 분석하고 반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임정빈(2009)은 북한의 농림수산물 대외무역 현황 분석과 남한의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출입 통계분석을 통해 북한 전체 수출입액 대비 대남 반출입 비중이 10% 미만인 품목을 반출입 유망품목으로 제시했다.

북한산 수산물은 대부분 선박을 이용해 해상운송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수산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물류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남북물류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갑영(1994)은 남북교역에는 도로 및 철도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이 적합하며, 남북한 항만의 성격,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남포항에 대응하는 항만으로써 인천항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종희 · 황진희(1996)는 남북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상운송 활성화 방

1)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 · 반입을 말하며, 반출 · 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남북한 사이의 교역은 민족간 거래로 간주되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계약요인 및 확대전략

〈표 1〉 선행연구 비교

구분	저자	연구내용
농산물반입	박성쾌·심기섭(1998)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개선방안
농산물반입	김영훈·임정빈(2001)	농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
	김영훈 외(2008)	농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
	임정빈(2009)	반출입 농수산물 유망품목 제시
남북물류협력	이갑영(1994)	남북교역을 위한 인천항의 역할
	강종희·황진희(1996)	남북 해상운송 활성화
	강종희 외(2006)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
	김영훈 외(2007)	남북물류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정봉민(2007)	남북한 해운항만 협력방안

안을 분석했다. 강종희 외(2006)는 해양수산부문을 해양환경보전, 수산, 항만, 해운물류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기존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협력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김영훈 외(2007)는 물류·운송 분야의 남북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 물류·운송분야 협력사례를 참조해 남북한 물류·운송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정봉민(2007)은 남북한 해상운송실적, 남북한 해운항만물류부문의 협력동향 등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산 수산물 반입에 대한 연구는 박성쾌·심기섭(1998)이 유일하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수행된 것으로 실태분석 없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반입제한품목의 축소, 긴급반입제한조치의 단계적 완화, 원산지 사후증명제도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해상운송에 대한 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과 관련하여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검토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통계, 북한의 수산물 교역통계, 북한산 수산물 반입통계, 북한산 반입수산물의 품질검사실적 등의 통계자료 분석 및 반입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및 반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써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출을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국으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수산물이 없으며, 둘째, 반출되는 수산물은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남한에 반입된 수산물을 북으로 회송하는 경우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Ⅱ. 남북한 수산물 수급 및 반입 현황

1. 남한과 북한의 수산물 수급

1) 남한의 수산물 수급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우리나라 1인당 1일 수산물 소비량은 1995년 16.4g에서 2006년에는 19.58g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은 2006년 기준 동물성 단백질의 약 41.9%를 공급하였다(〈표 2〉 참조).

〈표 2〉 우리나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구분	단위 : g/1인당 1일			
	1995	2000	2005	2006
합계	39.3	41.19	45.43	46.7
축산물	22.87	26.27	26.29	27.12
어패류	16.4	14.92	19.14	19.58
(비중)	41.7	36.2	42.1	41.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식품수급표』, 2007.

수산물 수요 증가로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1995년 321만 5천 톤에서 2007년에는 462만 5천 톤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내 생산량은 327만 5천 톤으로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였다(〈표 3〉 참조). 이에 따라 부족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백만 톤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60만 4천 톤을 수입하였다.

〈표 3〉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현황(생중량 기준)

구분	단위 : 천 톤				
	1995	2000	2005	2006	2007
공급	생산	3,348	2,545	2,714	3,032
	수입	948	1,420	2,557	2,646
	전년재고	460	582	531	512
합계	4,756	4,547	5,802	6,190	6,454
수요	국내소비	3,215	2,699	4,169	4,568
	수출	1,170	1,338	1,121	1,047
	차년이월	371	510	512	5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연차보고서』, 각호

2) 북한의 수산물 수급

FAO가 발표하는 수산물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007년 기준 71만 4천 톤으로 남한의 생산량 327만 5천 톤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한은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원양어업과 양식어업이 발달해 수산물 생산량이 300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나, 북한은 연근해어업에 주로 의존하였고, 어업자원의 감소, 유류부족에 따른 어선들의 출어횟수 감소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4〉 참조).

〈표 4〉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 천 톤				
	1995	2000	2005	2006	2007
합계	1,065	681	714	714	714
양식	739	468	508	508	508
어획	326	213	206	206	206

자료 : FAO, *Fishstat Plus : 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한편 FAO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에 무관하게 수출량을 매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1997년 동안 북한은 수산물 생산량 34만 7,229톤 가운데 5만 9,481톤을 수출하였으나, 2003~2005년 동안에는 생산량 26만 8,700톤 가운데 12만 3,368톤을 수출하여 생산량은 1/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수출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6.9kg에서 7.2kg으로 감소하였다(〈표 5〉 참조).

〈표 5〉 북한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구분	단위 : 톤, 천 명, kg/year				
	1995~1997	1997~1999	1999~2001	2001~2003	2003~2005
생산	347,229	291,212	269,917	269,200	268,700
수출	59,481	55,962	67,343	90,996	123,368
식용	381,568	206,073	182,984	202,872	169,420
인구	22,610	21,947	22,266	22,538	13,510
1인당 공급	16.9	9.4	8.2	9.0	7.2

자료 : FAO,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Yearbook : Commodities*, 각호.

수산물은 북한의 주요 교역품목이다. 북한은 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훈제, 조제어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액 가운데 수산물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표 6〉 참조), 남한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은 1990년 이후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7〉 참조).

북한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 이 3개국이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연평균 98%를 점하고 있다(〈표 8〉 참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의 제1교역국이었으나 2002년 10월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 및 한국

성숙경 · 홍성걸

〈 표 6 〉 북한의 수산물 수출입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수입	총수입	1,243	1,863	2,540	2,842
	수산물	6	26	27	38
	비중(%)	0.5	1.4	1.1	1.3
수출	총수출	1,143	1,174	1,925	2,523
	수산물	72	138	216	192
	비중(%)	6.3	11.8	11.2	7.6

자료 : UN Comtrade DB.

〈 표 7 〉 남한의 수산물 수출입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수입	총수입	135,120	160,481	261,238	309,383
	수산물	843	1,411	2,384	2,769
	비중(%)	0.6	0.9	0.9	0.9
수출	총수출	125,058	172,268	284,419	325,465
	수산물	1,722	1,504	1,193	1,089
	비중(%)	1.4	0.9	0.4	0.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수출입통계」, 2008.

〈 표 8 〉 북한의 수산물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수산물	72	138	216	192	150
중국	4	4	92	42	32
일본	67	93	38	26	-
한국	na	41	82	101	117
합계	71	137	212	170	149
비중(%)	97.8	99.3	97.9	88.5	99.6

자료 : UN Comtrade DB 및 관세청.

과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한국은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2005년 중국 어선들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북한산 주요 수산물 반입현황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은 1996년 3,599톤에서 2008년에는 6만 1,387톤으로 연평균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 표 9 〉 북한산 수산물 품목별 반입량

단위 : 톤

구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HSK코드	합계	3,599	24,115	51,535	54,917	55,081	61,387
0106	기타산동물			186	174	203	203
0321	활어		26	1	2	15	40
0302	신선냉장어류	28	493	15	4	10	8
0303	냉동어류	615	2,819	180	314	334	349
0305	건조염장훈제어류	24	558	2,037	1,904	2,029	1,898
0306	갑각류	41	372	446	859	2,189	3,725
0307	연체동물	2,810	18,287	45,504	47,161	44,575	49,875
0508	꽈각	5	40	280	228	40	18
0511	비식용사체		22	20	14	13	14
1212	해조류		11	3	15	9	10
1302	한천		5			1	
1604	조제어류		2	53	257	229	326
1605	조제갑각류연체동물		1,480	2,810	3,985	5,434	4,921

자료 : 통일부.

26.7% 증가하였다(〈 표 9 〉 참조). 남한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0307)의 반입량이 1996년 2,810톤에서 2008년 4만 9,875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기준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은 남한 전체 수산물 수입량(제품기준) 139만 2천 톤의 4%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를 수산물 수출을 통해 획득해야 하고, 남한은 수산물 생산량이 수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송거리가 가까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1. 반입규모의 소량화와 상품성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1997~2008년 동안 북한산 수산물 반입검사자료에 따르면, 업체별 평균반입량은 1997년 76톤에서 2008년 308톤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평균반입액은 14만 달러에서 55만 3천 달러로 역시 약 4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건당 반입량은 21톤에서 9톤으로, 건당반입액은 4만 달러에서 1만 7천 달러로 감소하였다. 소량 반입품목의 증가로 건당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0 〉 참조)²⁾.

2) 통일부는 통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품질 및 질병검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통계치가 다르다.

성숙경 · 홍성걸

〈 표 10 〉 북한산 수산물 평균 반입량 및 반입액

구분	반입량 (톤)	반입액 (만 달러)	업체평균			건당평균		
			업체수	톤	만 달러	건수	톤	만 달러
1997	7,674	1414	101	76	14	357	21	4
2000	24,430	3917.2	205	119	19.1	2181	11	1.8
2005	49,151	6113.7	135	364	45.3	5311	9	1.2
2006	51,400	7897.2	162	317	48.7	5756	12	1.4
2007	52,985	9438.3	181	293	52.1	5627	9	1.7
2008	59,110	1억 626.5	192	308	55.3	6386	9	1.7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표 11 〉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품별 부적합량

구분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단위: 톤							
							반입량	부적합량	비중(%)	건체품	냉동품	냉장품	염장품	활어폐류
반입량	7,674	24,430	49,151	51,400	52,985	59,110								
부적합량	79	162	48	84	171	270								
비중(%)	1.03	0.66	0.1	0.16	0.32	0.46								
건체품	-	36	-	26	36	11								
냉동품	71	88	10	48	119	240								
냉장품	0	6	8	-	0	0								
염장품	-	11	-	-	-	-								
활어폐류	8	22	30	11	16	19								

자료: 상동.

북한산 반입수산물 가운데 반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량이 가장 많은 해는 2008년으로 270톤이었으며, 부적합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7년으로 반입량의 1.03%에 불과하였다. 반입수산물의 품질이 아주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대부분 냉동품이었다(〈 표 8 〉 참조). 북한은 전력이 극히 부족하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의 가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압이 불안정하여 냉동·냉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냉동·냉장 수산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생산지 상품관리의 제약

수산물의 품질은 어획시기와 장소 그리고 선도유지를 위한 어획후관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산물은 현물평가가 중요하다. 북한은 1997년 「품질감독법」을 제정하여 수산물의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에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품질확인이나 경쟁매매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적항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뿐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만 아니라 수산물을 출하시기가 불규칙하므로 구매자가 현지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방문은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기방문이 어렵고 북한이 초청장 발급을 꺼려하기 때문에 반입업체들은 수산물을 직접 검품할 수 없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매년 9월 초 단동의 민경련 사무소에서 반입업체와 개선무역총회사간에 1년간 월 00톤, 월 0항차의 수산물을 계약 당시의 북한의 국가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입수산물의 종류, 품목, 보관방법, 반출시기 등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북한에서 반출하는 것을 그대로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반입품목, 집하시기, 선박출항일시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기반입이 어렵다. 단동의 민경련 사무소 혹은 통일부를 통해 선박의 출항일시를 사전에 통보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및 통관시 북한의 민경련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북한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북한산으로 인정받는 수산물은 i) 북한 선박이 어획한 수산물, ii) 제3국적선이 북한 영해 12해리 내에서 어획한 수산물, iii) 북한내에서 가공·처리하여 HS 6단위가 변경된 가공수산물이다.

그러나 현행 원산지 확인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 영해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 자체가 어려운 점이다. 남측 관계자의 북한 현지방문이 어렵고,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있어 HS 6단위 변경기준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 기준과 가공공정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질적 변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이다.

이에 따라 1989년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허가한 이후부터 제3국산 수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 등 원산지 허위표시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3년 남북원산지 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산 수산물의 위장반입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하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행위에 미숙한 탓에 계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약보다 돈을 많이 주는 업체를 우선시하거나, 상품의 규격과 품질에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³⁾.

3) 북한 주민들은 제품의 품질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냉동문어는 살아 있는 문어의 내장을 제거한 후 바로 냉동시킨 것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제품의 형태, 품질에 상관 없이 얼린 문어는 모두 냉동문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동후 상한 것이 발견되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북한과 사업을 원하는 남측 사업가들에 대한 기부금 요구, 수출업자가 당연히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 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요구 등이 있다.

3. 국내 반입에서의 제약

남북교역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이다. 이 가운데 북한산 수산물 반입과 관련해서는 통관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 반입수산물은 무관세 이므로 검사·검역위주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5조 제2항에 의거 반입물품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바지락의 경우 72시간 내에 유통해야 하며, 수조에 보관하는 조개류는 그 보다 약간 유통기간이 길다. 금요일에 반입된 수산물의 경우 토요일에는 검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검역을하게 된다. 무사히 검역을 통과할 경우 바로 시장에 유통되지만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수산물은 합격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평균 7일이 소요되므로 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7조에 의해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다. 살아 있는 상태로 반입되는 활어패류 등은 저온창고 혹은 수조에서 보관된 상태로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역을 하게 되면 제품의 선도가 떨어져 통관후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은 상태에서 통관하게 될 수도 있다. 검역합격증이 발급되는데 7일 정도 소요되므로 검사·검역과정을 줄일 수 없다면 질병검사기간을 포함하여 10일 정도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국내 생산 수산물의 어가하락을 우려하는 남한 어업인의 반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제한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8년에는 미꾸라지(활어), 냉동민어, 냉동홍어,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7개 품목이 제한되었으나, 2003년 10월 꽃게와 붉은 대게가 추가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미꾸라지(활어)를 해제하는 대신에 전명태(북어류)를 추가하였으며, 2004년 10월 오징어(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9년 7월 조미오징어를 추가하여 모두 12개 품목의 반입이 제한되었다⁴⁾.

4) 통일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반입승인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초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입승인한도를 공고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북한산 수산물의 해상운송은 동해안과 서해안이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한 북한의 서해안 지역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중국 선박을 용선하고 있으나, 동해안의 경우 민경련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북한 선박의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 선박은 월단위로 선박을 용선하는데 비해, 북한 선박은 항차당 운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에 대한 선용품 보급비용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동량 부족으로 컨테이너화물의 남북한 수송료는 제3국 수송료에 비해 2~3배 비싸다. 인천/남포간 20피트 컨테이너 수송료는 800달러로 인천/단동간보다 200달러나 더 비싸다. 남포항의 항비도 1만 달러로 한국에 비해 3~4배 비싸고, 요율조차 일정치 않다. 과다한 물류비는 반입업체의 생산원가에 전가된다. 이는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IV.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전략

1. 반입품목 및 반입량의 확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려면 먼저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운데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어종은 약 50여 종으로 추정된다. 북한 수역의 유용수산물이 약 120여 종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생산량이 적어 상품화되지 못한 어종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수산물의 반입을 적극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반입품목의 확대와 함께 반입량도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어로어업의 쇠퇴와 양식산업의 미발달로 수산물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가운데서 반입가능한 품목을 발굴하거나, 북한 수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지원, 북한 수역 입어를 통해 반입량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각 시·군의 자립자족을 목표로 하는 지역자립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각 시·군은 비슷한 규모의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사업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노동력 및 재원의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도 다품종 소량생산일 수 밖에 없다(김병로, 1999). 또한 개선무역총회사가 남한의 반입업체와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수산물을 수출하는 조직이 상이하다.

따라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려면 북한의 정치 및 사회조직, 수산물 생산

성숙경 · 홍성걸

체제에 맞게 반입량 확대와 동시에 반입품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반입은 대량반입에 비해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대량반입에 따른 어가하락을 피할 수 있고, 남한의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가 용이하여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반입승인품목의 자유화

우리나라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해 12개 품목은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이외의 국가로부터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2009년에 지정된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11개

〈표 12〉 북한산 수산물 반입승인품목별 반입량

단위 : 톤

구분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HSK코드	합계	115	997	2,378	2,279	2,691	2,893
0305-30-1000	어류파레트		44	606	1,065	1,190	994
0305-59-3000	건명태	33	502	1,423	838	830	863
0306-14-3000	냉동꽃게		11	5	30	65	11
0306-14-9000	냉동기타게	40	140	103	6	57	358
0306-24-1010	꽃게		21	1			
0306-24-1090	기타게		194	29	121	378	251
0307-29-1000	냉동가리비	8	85	54	97	9	270
0307-49-1020	냉동오징어			38		10	
0307-59-1020	냉동낙지	34		119	122	152	146

자료 : 통일부.

〈표 13〉 북한산 수산물 반입승인품목별 제3국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HSK코드	합계	50,404	55,312	113,530	137,865	125,412	114,710
0305-30-1000	어류파레트	16	262	1,233	1,298	628	704
0305-59-3000	건명태	604	1,433	2,376	2,674	3,951	3,688
0306-14-3000	냉동꽃게	-	11,588	18,092	24,074	24,885	17,993
0306-14-9000	냉동기타게	2,141	2,042	9,472	10,294	10,129	12,525
0306-23-3000	염장새우	9,366	15,973	21,816	25,442	21,628	15,850
0306-24-1010	꽃게	-	95	276	226	80	13
0306-24-1090	기타게	-	250	7,181	9,195	7,830	5,932
0307-29-1000	냉동가리비	436	785	2,132	2,263	2,779	2,935
0307-41-2000	활오징어	9	1	2	0	-	0
0307-49-1020	냉동오징어	22,385	2,714	17,705	28,327	22,534	23,902
0307-59-1020	냉동낙지	15,446	20,170	33,245	34,072	30,969	31,168

자료 : 관세청.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반입제한품목의 반입량과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염장새우와 활오징어 등 2개 품목은 반입량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9개 품목의 2008년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은 2,893톤으로 제3국 수산물 수입량 11만 4,710톤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및 〈표 13〉 참조).

값싼 북한산 수산물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가능성과 국내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을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입제한이 소비자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자유화한다고 해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과 수출량이 모두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양은 당분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품질관리개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북한산 수산물은 신선도는 매우 높지만 포장, 선별, 동결수준 등은 베트남, 태국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수산물 상품화에 대한 인식 및 선별·규격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측 반입업자들이 북한의 수산물 산지를 방문할 수 없으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대신하여 특별한 가공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선별, 계량 등에 있어서 남한의 품질수준에 맞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어획된 수산물의 선별, 세척과정에서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산물 가공용 물과 얼음, 위생, 포장, 저장, 운송과정 등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반입업체들은 사전에 북한의 기온, 해수온도 등을 고려하여 북측의 작업조건과 남측이 원하는 품질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북측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4. 원산지 증명제도개선

일반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⁵⁾에 대해 ‘남북원산지합의서’ 제4조 및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i) 남한과 북한에서 반출되는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ii)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가공 또

5)) 현재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규정은 일반교역물품과 개성공단반입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다. 즉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된 물품과 여타 지역의 물품은 그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증명절차가 서로 다르다.

성숙경 · 홍성결

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등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불인정공정기준(최소가공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다.

완전생산기준은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1개 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 생산 및 사육 변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로 해석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 판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가공공정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HS번호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적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 이상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부가가치율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다. 특정가공공정기준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남북원산지합의서’에서는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rule),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rule)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북한산 수산물의 원산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제3국산 수산물의 위장반입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수산물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남한자본이 북한의 수산가공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원산지 판정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의 기업이 수입한 원부자재를 이용해 중간재로 사용될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의 원부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이렇게 공급된 원부자재를 어느 과정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게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HS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북한에서 제3국산 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수산물이 반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산지 판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매년 백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중국, 일본, 북한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2007년 기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은 5만 5,081톤으로 수산물 수입량의 4%에 불과하였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에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대한 반입승인제한, 북한의 품질관리미흡 등으로 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는 남한의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의 신선, 냉장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활바지락 1포대(20kg)의 평균가격은 2만 5천 원이지만, 북한산의 반입이 없을 때는 3만 5천 원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품질관리개선, 원산지 증명제도의 개선, 반입승인품목의 자유화 등을 통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북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남한의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남한의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가하락에 있으므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입된 북한된 수산물이 어가하락을 야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경로, 소비자, 판매가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에너지부족에 따른 어선들의 출어횟수 감소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수산물 양식업 투자지원, 북한수역 입어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없이 현상태에서 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종희 · 황진희,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상운송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6.
-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통일연구원, 1999.
- 김영훈 · 나희승 · 황진희, 남북 물류 ·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7.
- 김영훈 · 임정빈,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영훈 · 권태진 · 남민지,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김운근, “북한의 농업 및 수산업에 관한 실제적 분석”, 북한경제논총, 제13호, 2007.
- 김운근 · 서승진 · 김정봉,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정봉,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 수산협력 방안”, 농촌경제, 제16권 제4호, 1993, pp.101 – 116.
- 남성욱,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 협력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6, pp.149 – 176.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연차보고서, 각호.
- 박성쾌 · 심기섭,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신영태, “남북한 어업 협력 방안”, 통일경제, 통권 제47호, 현대경제연구원, 1998.11
- 이갑영, “남북교역에 따른 인천항의 과제와 대응”,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0권, 1994, pp.735 – 765.
- 임정빈, “북한의 농림수산물 대외무역 분석을 통한 남북한 반출입 활성화 방안”,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p.129 – 165.
- 정봉민, “남북한 해운항만물류 부문 협력방안”,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 2007.1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北韓水產業의 產業的基盤 및 關聯制度에 관한 研究, 199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2007, 2008.
- 홍성결 · 임경희,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FAO,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Yearbook : Commodities*, 각호.

Expanding th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ouk-Kyung Sung and Seong-Gul Hong

Abstract

South Korea imports more than one hundred tons of fishery products every year from China, Japan, North Korea, etc. However, imported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was only 4% of the total fishery products imported in 2007. Though South-North Trade as inter-Korean trade is exempted from tax,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have not been activated owing to import restrictions, insufficient quality control etc.

Expanding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eems, however, to contribute to lessen the supply and demand unbalance in fishery products of South Korea. It will especially gratify a part of fresh and cold fishery products demand.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by quality control improvement, reformation of origin certifying system, import liberalization etc.

This study researches the demand and supply of fishery produc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ual conditions of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and suggests strategies to expand their imports.

As the greatest reason to oppos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is the pricing pressure of domestically produced fishery products due to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we need to research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channels, retail markets, sales prices of imported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to verify that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has not caused lower pricing of domestically produced fishery products.

key words :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outh-North Korea trade, South-North Korea sea transport